

정부(통일부)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정부(통일부)는 22일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른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2년)’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4일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 국내외 23개 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위 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우선 향후 3개년(2020년~2022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비전 및 목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2017년 4월 확정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비전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으로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번 2차 계획은 인권에 앞서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세계최악의 인권탄압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권의 핵심이자 여타 인권을 보장하는 선결적 인권인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자유권)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는 3년 전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보다 매우 후퇴한 부끄러운 내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 특히 기본계획은 ‘북한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의 수용가능성,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서, 국제사회는 이미 2014년부터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그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책임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제1조,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사실상 북한 지도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피해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지 인권가해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 하는가? 이는 치안문제도 상대방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면 범죄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궤변일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싫어하는 인권증진활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망발이다.

3. 또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도주의·인권 차원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월선(남하)한 북한주민 및 선박 등 소환’ 방침도 들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탈북 선원 2명에게 ‘선장 외 승선원 15명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비밀리에 강제복송하였다가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으로 유엔과 인권단체로부터 국제적 지탄을 받았다. 당시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의 살해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채 북한 지도부의 송환요청에 순응하여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 계획안이 효력을 가지면 앞으로는 강제북송과 같은 사안이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공산이 크다. 북한 지도부 의중에 따라 귀순의사를 가진 탈북민을 불투명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위장해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중대한 자국민 보호의무를 방기하며 탈북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이와 함께 계획안에 거론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추진'이란 내용도 논란을 유발하는 대목이다. SDGs는 빈곤, 질병, 교육, 성 평등, 난민, 분쟁 등 인류 보편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류사에 유례없는 패쇄와 독재를 일삼는 북한에서는 SDGs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고, 전례에 비추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선의의 지원 또한 수령독재 강화를 위해 전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종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던 인사들이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권이 아니라 식량권 등 사회권이라고 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비호하던 논리와 맥락이 닿아 있는 계획으로 보인다.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진행되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된다. 북한에 대한 SDGs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혹은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이를 잘못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또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이었으나 이번 2차 기본계획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연구 확충'으로 바뀌어 '책임규명'이라는 중요한 북한인권법 제정취지의 한 축이 사라졌다. 현재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센터가 더욱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통해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기록 보존해 통일이후의 북한인권 정책을 마련하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추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었다.

6. 이번 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국제적 기준의 인권개선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현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우친 매우 비겁하고 후퇴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회권 및 자유권의 포괄적 불가분적 접근을 균형적으로 담지 못하고 사회권 보호를 핑계로 북한인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자유권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을 고사(枯死)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의 궁극적인 방향을 놓치고 허황된 명분에 시간과 노력을 탕진하게 만드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계획은 전면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 4.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노 체인, 북한전략센터, 자유통일문화원, 북한인권시민연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열린북한, HRNK, HRNKCANADA, 6·25국군포로가족회, 과거청산통합연구원,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징검다리, 나무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2020년~2022년)

2020. 4.



- 북한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북한인권 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
-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상황 개선, 교류협력 확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추진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송환 등을 위해 대북협의를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상봉, 생사확인 등 지원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등 권익 향상 및 기념사업 추진
- 인도주의·인권 차원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월선(남하)한 북한주민 및 선박 등 송환